

통상적인 근무로 특별히 과로하지 아니한 경우 기왕증인 고혈압으로 열공성 뇌경색의 발병이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

(제공 : 근로복지공단)

판결요지

원고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고혈압 증세가 있어 위 회사로부터 고혈압 증세의 악화로 인한 사고발생의 예방을 위한 정기혈압 측정검사를 권유받고도 이에 한번도 응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기계보수반원으로서의 통상적인 근무를 하였을 뿐 특별히 과로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원고의 이 사건 질병은 기왕증인 고혈압 증세의 자연악화로 나타난 것으로 추인되고 그 고혈압증세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악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기록상 원고의 업무와 위 고혈압증세 또는 이 사건 질병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

【판례내용】 대법원 제3부, 1995. 5. 26. 판결
94누1534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참조판례】 대법원 1974.7.23. 선고, 74다119 판결
1982.3.23. 선고, 80다1857 판결
1992.4.4. 선고, 91누10051 판결
1993.2.12. 선고, 92누16553 판결
1992.5.12. 선고, 91누10022 판결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 11. 2. 선고

94구10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이유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당사자가 부지로서 다툼 서증에 관하여 거증자가 특히 그 성립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법원은 다른 증거에 의하지 않고 변론의 전취지를 참작하여 자유심증으로써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할 것이므로(대법원 1974. 7. 23. 선고, 74다 119 판결; 1982. 3. 23. 선고, 80다 185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이 변론의 전취지를 참작하여 소론이 지적하는 서증(을 제 3호증의 1·4)의 각 성립을 인정하고 이로써 사실판단의 자료로 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인정을 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관계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론이 지적하는 점(원고의 업무내용 및 피고측 자문의의 소견)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

어 수공이 가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나아가 소론이 들고 있는 판결(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누 10051 판결; 1993. 2. 12. 선고, 92누 16553 판결)은 아파트공사장의 시멘트믹서공 또는 운전 및 영업직을 겸임하는 사원이 평소보다 특히 과중한 업무수행을 하던 중 뇌경색증이 발병한 사안에 관한 판단이어서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원심의 판단이 위 판례에 저촉된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된 바와 같이, 원고가 1977. 12. 27. 소외 ○○제강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그때부터 위 회사 공장에서 연주와 전기로의 고장시 수리와 정기적인 정비업무를 담당하여 오던 중 휴가일인 1993. 3. 15. 18:00~19:00경 동료근로자의 집에서 놀다가 귀가하기 위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시동을 걸던 중 갑자기 어지러움증을 느껴 진단결과 열공성뇌경색으로서 그 발병원인이 고혈압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바, 원고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고혈압 증세가 있어 위 회사로부터 고혈압 증세의 악화로 인한 사고발생의 예방을 위한 정기혈압측정검사를 권유받고도 이에 한번도 응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기계보수반원으로서의 통상적인 근무를 하였을 뿐 특별히 과로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원고의 이 사건

질병은 기왕증인 고혈압 증세의 자연악화로 나타난 것으로 추인되고 그 고혈압증세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악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기록상 원고의 업무와 위 고혈압 증세 또는 이 사건 질병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내세우는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 10022 판결은 작업환경이 직업병을 일으킨 경우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개연성이 입증되면 인과관계가 추단될 수도 있다는 사안에 관한 판단이어서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고, 또 원고의 업무상과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는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누 5433 판결 역시 여기에 원용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